



제1613호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규 칙 제 1061 호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체 육 진 흥 과 3
- 규 칙 제 1062 호 남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세 무 과 13

공 고

- 공 고 제 1129 호 성인문해교육 "남동글벗학교" 교사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평 생 교 육 과 18
- 공 고 제 113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립초등학교 외 5개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교 통 행 정 과 19
- 공 고 제 1132 호 2021.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토 지 정 보 과 24
- 공 고 제 1136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과 25
- 공 고 제 1140 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자동차관리과 27
- 공 고 제 1141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과 29
- 공 고 제 1144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자동차관리과 33
- 공 고 제 1152 호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여 성 가 족 과 36
- 공 고 제 1155 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상어린이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열람 도 시 재 생 과 46
- 공 고 제 1156 호 2021년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아르바이트] 모집공고 총 무 과 48
- 공 고 제 1160 호 「제21회 소래포구축제 주관기획사 선정」 제안서 평가 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문 화 관 광 과 50
- 의회사무국공고 제 37 호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56
- 의회사무국공고 제 38 호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65
- 의회사무국공고 제 39 호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제시 의 회 사 무 국 73
- 의회사무국공고 제 40 호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82

회 람								
----------------	--	--	--	--	--	--	--	--

- 의회사무국공고 제 4 1 호 「남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 의 회 사 무 국 93
견수렴
- 의회사무국공고 제 4 2 호 「남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의 회 사 무 국 101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제시
- 의회사무국공고 제 4 3 호 「남동구 도로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 회 사 무 국 120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보 건 소 공 고 제 4 6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 식 품 위 생 과 134
리 공고
- 보 건 소 공 고 제 4 7 호 남동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제2센터 CCTV 설치에 따른 건 강 증 진 과 135
행정예고 알람

고 시

- 고 시 제 8 8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138
- 고 시 제 8 9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송이주차장)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토 시 재 생 과 143
및 실시계획 고시
- 고 시 제 9 0 호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폐기 고시 토 지 정 보 과 145

규 칙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5월 27일

남동구 규칙 제1061호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9명”을 “8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6명, 합숙근무자(조리사) 1명”을 “6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감독, 코치,”를 “감독·코치 및”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독, 코치”를 “감독·코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6. 서약서 1부 (별지 제12호서식)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를 “선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감독·코치 및 합숙소근무자(조리사)”를 “감독·코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공가 및 경조사는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22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를 “공가 및 경조사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감독 및 코치”를 “감독·코치”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를 “선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의 연봉은 별표1”을 “선수의 연봉은 별표 1”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별표 7”을 “별표 4”로, “범위 안에서”을 “범위에서 대회출전”로, “별표 5과”를 “별표 2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7”을 “별표 4”로, “별표 6”을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별표 7”을 “별표 4”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6항) 중 “사기양양을”을 “사기를 드높이기”로, “별표 6”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입상보상금과 특별보상금, 기록갱신보상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독·코치의 입상보상금과 특별보상금은 해당 종목별 최고 성적 1개만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5조제2항 중 “별표 8” 을 “별표 5”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기간 내” 를 “기간” 으로 한다.

제17조 중 “별표 9와” 를 “별표 6과” 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자” 를 “사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8호 서식” 을 “별지 제8호서식”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9호 서식” 을 “별지 제9호서식” 으로 한다.

제19조 중 “감독, 코치,” 를 “감독·코치 및” 으로, “별지 제13호 서식” 을 “별지 제13호서식” 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5부터 별표 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동구청 육상경기부 감독·코치 및 선수 등급별 연봉 (제3조제3항 관련)

구 분	급 수	자 격 기 준	연 봉
감독	1급	○ 최근 2년간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 이상 입상 또는 단체전 3위 이내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사람 ○ 국제대회(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서 3위 이내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사람	50,000,000원
	2급	○ 최근 2년간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1회 이상 1위 입상 또는 단체전 3위 이내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사람	40,000,000원
코치	1급	○ 최근 2년간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 이상 입상 또는 단체전 3위 이내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사람 ○ 국제대회(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서 3위 이내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사람	40,000,000원
	2급	○ 최근 2년간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1회 이상 1위 입상 또는 단체전 3위 이내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사람 ○ 남동구청 육상경기부 선수로 10년 이상 소속되어 팀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사람	30,000,000원
선수	1급	○ 최근 2년간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연속하여 1위 입상자 ○ 최근 2년간 국가대표선수로서 국제대회(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 대회,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여 3위 이내 입상자 ○ 최근 2년간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3회 이상 1위 입상자	60,000,000원
	2급	○ 최근 2년간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회 이상 1위 입상자 ○ 최근 2년간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2회 이상 1위 입상자	50,000,000원
	3급	○ 최근 2년간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회 이상 3위 이내 입상자 ○ 최근 2년간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3회 이상 3위 이내 입상자	40,000,000원
	4급	○ 최근 2년간 각종 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자 ○ 팀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이 추천한 사람	30,000,000원

※ 같은 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에는 순위가 높은 1개 종목만을 반영한다.

[별표 2]

대회출전 선전장려금(제14조제1항 관련)

구 분	국 제 대 회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	비 고
금 액	선수당 300,000원	팀 당 500,000원	팀 당 200,000원	

[별표 3]

보상금 지급구분 (제14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입 상 보상금	종 목 별			지 급 액			
				1위	2위	3위	
	감독			250,000	150,000	100,000	
	코치			200,000	100,000	70,000	
	선수	전국규모	개 인	300,000	200,000	100,000	
			계 주	명×200,000	명×150,000	명×70,000	
		전국체전	개 인	500,000	300,000	200,000	
			계 주	명×300,000	명×200,000	명×100,000	
		아시아규모		1,000,000	700,000	500,000	
세계규모		3,000,000	2,000,000	1,000,000			
	기 록 구 분					지 급 액	
특 별 보상금	감독 코치	· 소속 선수의 올림픽대회 3위 이내 · 소속 선수의 세계선수권대회 1위				5,000,000	
	선수	· 올림픽대회 3위 이내 · 세계선수권대회 1위 · 전국체육대회 3관왕 이상				10,000,000	
		· 전국체육대회 2관왕 이상 · 아시아선수권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1위				6,000,000	
기 록 갱 신 보상금	선수	대회신기록 (타이기록)	전국체육대회			500,000	
			전국규모대회			300,000	
		한국신기록(타이기록)				800,000	
		세계신기록(타이기록)				1,500,000	

[별표 4]

성과금지급 점수산정기준(제14조제6항 관련)

구 분	1위	2위	3위
올 림 픽 게 임	1,000점	600점	400점
세 계 선 수 권 대 회	600점	400점	300점
아 시 안 게 임	400점	300점	200점
아 시 아 선 수 권 대 회	300점	200점	120점
전 국 체 육 대 회	200점	120점	80점
전 국 규 모 대 회	15점	10점	6점

비고 : 전국규모대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해 당 전 국 규 모 대 회 명 칭
육 상	①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②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③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 ④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⑤ KBS배전국육상경기대회

[별표 5]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제15조제2항 관련)

급수	유치비 지급기준	지 급 액
1급	○ 최근 2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로서 국제대회(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여 3위 이내의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한국 신기록 수립자 및 부별 한국 신기록 수립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국가대표 선수인 사람	70,000,000원
2급	○ 전년도 또는 현년도 국가대표상비군인 사람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체육대회 1회 이상 1위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규모대회 2회 이상 1위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한국 신기록 수립자	50,000,000원
3급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규모대회 1회 이상 1위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체육대회 1회 이상 2위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규모대회 2회 이상 2위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대회신기록 수립자	30,000,000원
4급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경력자	15,000,000원

※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은 선수의 개인기록에 한함(단체기록 인정불가)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지급금액을 감할 수 있음

[별표 6]

훈련피복기준(연간)(제17조 관련)

구 분	운동복	유니폼	땀 복	파 카	운동화	경기용 신 발	가 방	T셔츠	기 타
지급량	3회	2회	2회	1회	3회	2회	1회	4회	필요시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 입상 시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일반보상금 성격의 입상 보상금이 명확한 기준 없이 지도자의 경우 중복 지급되고 있어, 합리적인 입상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운동부 지도자의 입상보상금과 특별보상금 중복 금지 규정 삽입 (제14조 제4항)
- 미운영 합숙소근무자(조리사) 규정 삭제 (제2조 제2항, 제3조 제8항, 제4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규 칙

남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5월 27일

남동구 규칙 제1062호

남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주민세(재산분)”을 “주민세(사업소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

접 수 일 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적	세율	세액	납부 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동)

과세 번호	사업소 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 적	세 율	산출세 액	가산 세	계	결의 일	결 재		
		성 명 (법인 명)	주민(법 인) 등록번호	주소								담 당 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7769호, 2020. 12. 29.)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및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세목 명칭 정비 및 별지서식 개정(제9조, 제10조)
 - “재산분” → “사업소분”
 - 별지 제7호, 제8호서식 개정
-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법률 정비(제10조)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129호

2021학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남동글벗학교’ 문해교사 최종 합격자 공고

남동구평생학습관 2021학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남동글벗학교’문해교사 모집의 최종 합격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남 동 구 청 장

1. 최종 합격자

분 야	단 계	성 명	응시번호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초등 1단계 소망반	이*경	2021-03

2.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제출일시) 2021. 5. 27.(목) 15:00까지

(제출장소) 남동구 평생교육과(남동구평생학습관 3층)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

(문 의) 남동구청 평생교육과(☎453-6057)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13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초등학교 외 6개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초등학교 외 6개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기능(신호, 과속)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로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5일

남 동 구 청 장

1. 행정예고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초등학교 외 6개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목적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초등학교 외 6개교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기능(신호, 과속)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목적 및 주요내용(설치위치)을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행정예고의 대상(6개 학교, 11개소)

연번	학교명	설치위치	수량	장비	설치시기	비고
1	도림초등학교	통학로	2	다기능	2021. 6.~8.	
2	소래초등학교	통학로	2	다기능	2021. 6.~8.	
3	원동초등학교	정문	1	다기능	2021. 6.~8.	
4	동방초등학교	정문,통학로	2	다기능	2021. 6.~8.	
5	남동초등학교	통학로	2	다기능	2021. 6.~8.	
6	장서초등학교	정문	2	다기능	2021. 6.~8.	
합계	6개 학교		11			

※ 사업 위치도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5.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1. 5. 25. ~ 2021. 6. 14.(20일간)

7.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1. 5. 25. ~ 2021. 6. 14.(20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2] 서식 참조
-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 교통행정과(주차시설팀)
 - 전 화 : 032)453-2688 / FAX : 032)453-289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붙임 1】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예정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위치도

1. 도림초등학교 일원



2. 소래초등학교 일원



3. 원동초등학교 일원



4. 동방초등학교 일원



5. 남동초등학교 일원



6. 장서초등학교 일원



※ 화살표는 차량 주행방향임.

[붙임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 수집·이용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의견서 제출 시
-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e-mail
- 보유·이용기간 : 수집 · 이용 동의일로부터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까지
- 동의의 거부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접수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 . .

성명

(서명)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132호

2021.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1년 5월 31일

남 동 구 청 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

- 기 준 일 : 2021. 1. 1.기준
- 대 상 : 42,602필지
- 결정·공시일 : 2021. 5. 31.
- 결 정 내 역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 이의신청

- 기 간 : 2021. 5. 31. ~ 6. 30.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
- 방 법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 문의처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32)453-6152~6153

공 고

남동구공고 제2021-1136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부재 무단전출 수취인불명 소유자 미상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1.5.25. ~ 2021.6.8.
3. 공 고 대 상 : 03라2580 외 3대
4. 공 고 내 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자진처리명령서 반송 내역서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남동구)	수취인명	주 소	발송일자 (1,2차)	미배달사유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비고
1	2021-00 095	03라2580	옵티마	남촌로 68-20 도로끊기는 구석 쪽	조*철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1*번길 *3-*, *동 B0*호(**동, 금***라)	2021.4.22. 2021.5.10.	수취인불명 수취인불명	2021.4.8.	(주)인천폐차 사업소	032-814 -7077	
2	2021-00 101	29더8882	NEW 그랜저XG(NEW GRANDEUR XG)	남동구 논현고잔로47에서 아암대로1247가는 길목, 논현고잔로26 향기보듬이어린이집 맞은편	V* M**H T**N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리 **3번지 *호	2021.4.22. 2021.5.10.	기타 기타	2021.4.8.	(주)인천폐차 사업소	032-814 -7077	
3	2021-00 104	47우1337	에쿠스(EQUUS)	수산동 443-8	(주)에***중* *설	인천광역시 연수구 **외로*0번길 **1, *층(**동, 광**딩)	2021.4.22. 2021.5.10.	수취인불명 수취인불명	2021.4.16.	(주)인천폐차 사업소	032-814 -7077	
4	2021-00 109	18오2564	모닝	구월동 1230-2	안*형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길*1번길 *0-*	2021.4.22. 2021.5.10.	수취인불명 수취인불명	2021.4.7.	(주)인천폐차 사업소	032-814 -7077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140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1.5.25. ~ 2021.6.8.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공고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53우0591 외1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

2021년 5월 25일

남 동 구 청 장

강제처리 대상차량 및 이해관계인 내역

일련 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 명	성 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주 소	보관장소 /보관일	압류(저당)권설정내역
2021-00058	53우0591	SM5 LPLi	이*수 69****	인천광역시 중구 **서로**3번길 *1 (**동)	㈜서울폐차사업소/ 2021.3.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교통민원과, 세무2과, 자동차관리과) 인천광역시 계양구(교통민원과) 인천광역시 중구(세무과, 교통운수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차량민원과, 노인장애인과, 세무2과) 경기 부천시(주차지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세입징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인천중부경찰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교통행정과) 한국도로공사 인천광역시(교통관리과) 광주 광산구(교통지도과)
2021-00072	26보2747	S350 BlueTEC	강**설(주)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로4*길 *-1, **빌딩 *층(**동)	기전산업(주)폐차사 업소/ 2021.3.20.	아주캐피탈주식회사 동작 세무서(법인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 서초구청(세무2과) 동작구청(세무1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울남부지사 가평군청(세정과)

공 고

남동구공고 제2021-1141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5.25. ~ 2021.6.8.**
3. 공고대상 : **이륜차 7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1-0014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3.31. ○ 견인일 : 2021.5.13.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114 앞 자전거거치대
	2021-0017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4.14. ○ 견인일 : 2021.5.13.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간석동 616-61
	2021-0017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4.14. ○ 견인일 : 2021.5.13.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석정로579번길 14-5
	2021-0017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4.14. ○ 견인일 : 2021.5.13.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예술로 376 맞은편 공원 내
	2021-0019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4.20. ○ 견인일 : 2021.5.13.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030 담방마을아파트 109동 앞 지하주차장 계단 밑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1-0019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4.20. ○ 견인일 : 2021.5.13.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030 담방마을아파트 109동 앞 지하주차장 계단 밑
	2021-0019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4.20. ○ 견인일 : 2021.5.13.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030 담방마을아파트 109동 앞 지하주차장 계단 밑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수취인명	주소	발송일자	미배달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예정)일	보관장소	비고
1	2021-0014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114 앞 자전거거치대	2021.5.13. 이후	(주)인천페차 사업소	
2	2021-0017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동 616-61	2021.5.13. 이후	(주)인천페차 사업소	
3	2021-0017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석정로579번길 14-5	2021.5.13. 이후	(주)인천페차 사업소	
4	2021-0017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예술로 376 맞은편 공원 내	2021.5.13. 이후	(주)인천페차 사업소	
5	2021-00192	번호판없음(3대)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030 담방마을아파트 109동 앞 지하주차장 계단 밑	2021.5.13. 이후	(주)서울페차 사업소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144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1.5.25. ~ 2021.6.8.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강제처리 공고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이륜차 3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

2021년 5월 25일

남 동 구 청 장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1-0014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4.2. ○ 견인일 : 2021.4.28. ○ 보관장소 : (주)서울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간석로 14
		
	2021-00149	
		
	2021-0015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4.2. ○ 견인일 : 2021.4.28. ○ 보관장소 : (주)서울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평온로6번길 10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대상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명령서	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2021-0014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간석로 14	2021.4.28.	(주)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2	2021-0014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경인로742번길 18	2021.4.28.	(주)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3	2021-00150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평온로6번길 10	2021.4.28.	(주)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1-1152호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 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의거 위탁기간을 정비하고, 수탁기관의 범위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격 정비 : (안 제7조1항 1,2) 삭제
-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 변경 및 구문정비: (안 제7조2항)
- 민간위탁 근거 법령 추가 : (안 제7조3항)
-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정비 : (안 제16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여성가족과
- 연락처 : ☎ 453-8333 FAX 453-586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 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의거 위탁기간을 정비하고, 수탁기관의 범위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격 정비 :(안 제7조1항1,2)삭제
-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 변경 및 구문정비 :(안 제7조2항)
- 민간위탁 근거 법령 추가 :(안 제7조3항)
-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16조)삭제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가족사업안내 지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2

1)

남동구조례 제 호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위탁 체결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운영) ①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목적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 -----. -----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 -----.
1. 건강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삭 제>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삭 제>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삭 제>

[참고자료]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지침(p223)

※ 각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격에 위에 열거되어 있는 기관 중 일부만 규정하여 제한하고 있을 경우 상 위 법령에 위배되므로 조례 개정 요망(동 사항은 국무조정실의 지방자치 단체 조례 정비 개선대상에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9. 6. 11.>

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155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상어린이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상어린이공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신청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방재하수과(☎032-453-8412), 도시재생과(☎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7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41-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
- 명칭: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지상어린이공원 복원조성)

3. 사업규모

- A=1,454.4㎡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방재하수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2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이름	주소	
1	구월동	1341-9	공	1,520.4	1,454.4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남동구청(방재하수과 453-8412, 도시재생과 453-2955, 남동구 소래로 633)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156호

2021년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

- 접수기간 : 2021. 6. 3.(목) ~ 6. 11.(금) 18:00한 (9일간)
- 모집인원 : 60명 * 특별모집 : 18명 / 일반모집 : 42명
- 접 수 처 : 남동구 예약 홈페이지(www.namdong.go.kr/main/community/apply/parttime.jsp)
- 근무기간 : 2021. 7. 5. ~ 7. 30. 13:00 ~ 18:00 (20일간, 주5일 근무기준)
* 근무요일 및 시간은 배치 기관별 다를수 있음
- 보 수 : 1일 50,600원(교통비 및 식비 포함), 1주 만근시 1일 주차수당 지급(마지막주 제외)
*2021년 남동구 생활임금 10,120원/1시간 적용
- 지급방법 : 근무기간 종료후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금 공제 후 개인계좌로 입금
- 근무내용 : 행정업무 및 현장근무(환경정비 분야 및 코로나19 방역 등) 지원
- 자격요건
 - 공고일(2021. 5. 28.)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대학(교) 재학생으로 최근 2년간(2019년 하계 ~ 2021년 동계) 우리구에서 행정체험연수(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학생
* 제외사항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방학의 개념이 없는 대학 제외, 휴학생 및 유학생(해외대학), 대학원생 제외
- 선발방법
 - 모집인원 이내 접수 시 적격자 중 전원 선발
 - 모집인원 초과 접수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및 법정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를 우선 선발(*30% 이내) 후 나머지 학생은 전산추첨에 의해 선발
* 신청서 기재사항 중 거주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정자녀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선정에서 제외
* 특별모집의 경우 행정체험연수 참여 소득으로 인한 급여 변동 및 보장증지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은 신청자 본인이 확인하여 신청(보장증지 시 신규 신청 절차와 동일함)
- 추첨일시 및 장소
 - 추첨일시 : 2021. 6. 18.(금) 11:00 / 남동구청 4층 개나리홀
 - 추첨방법 : 추첨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전산추첨 (희망시 참관 가능:선착순 3명 이내)
- 최종선발자 공고 : 2021. 6. 21.(월) 09:00 / 남동구 홈페이지 새소식란
- 신청자 유의사항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신청은 당면 무효 처리됨
 - 대상자 선정 후 6.24일까지 재학증명서('21.5.1일 이후 발급분) 제출 필요
미제출시 선발 당면 무효처리됨.
 - 연락 가능한 개인 전화(휴대폰)번호 반드시 기재
 - 최초 근무일 본인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참석
-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 총무과(☎ 453-2234)로 문의바랍니다.

※ 코로나19 및 2021년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공고 내용은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28일

남 동 구 청 장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160호

「제21회 소래포구축제 주관기획사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우리 구에서는 제21회 소래포구축제 주관기획사 선정에 따른 입찰업체의 제안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보내주신 신청자료의 개인정보는 철저한 보안에 의해 관리되고 해당 업무 추진 시에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모집기간 : 2021. 5. 27.(목) ~ 6. 16.(수) 까지

2. 모집인원 : 예비위원 21명 이상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이상)

3. 모집분야 : ① 관광 ② 축제 ③ 공연·행사기획 및 연출
 ④ 문화예술 ⑤ 전기·조명

4. 참여자격(아래 자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

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나. 정부투자기관 · 출연기관 ·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다. 대학의 전임교수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자

라.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마. 해당분야 전문기관 · 단체 임직원

바. 시민단체 종사자 등 구청장이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제외대상

가.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나.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다.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라.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신청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1. 5. 27.(목) ~ 6. 16.(수) 18:00 까지
- 나. 접 수 처 : 남동구청 문화관광과(☎032-453-2142)
- 다. 접수방법 : 이메일 wool346@korea.kr(원본스캔), 공문(비공개)
- ※ 이메일 제출 시 담당자 접수유무 확인 바람

라. 제출서류

- [붙임1]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 [붙임2] 보안각서, [붙임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관련분야 참여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자격요건 확인 서류)

7. 평가위원 선정

- 가. 일 시 : 2021. 6. 25.(금) 15:00~
- 나. 선정인원 : 평가위원 7명
- 다. 선정방법 : 제안업체의 추천을 통해 다빈도, 고령자 순으로 선정
- 라. 선정통보 : 개별 통보

8. 평가위원회 개최

- 가. 일 시 : 2021. 6. 28.(월) 14:00~
- 나. 장 소 : 남동구청 4층 개나리홀
-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지)

9. 기타사항

- 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별도의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 평가를 마치면 해촉된 것으로 봅니다.
- 나.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나 제출 서류의 위반 시에는 평가위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평가위원은 비공개로 할 예정이오니 후보자 등 록신청 사실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바.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문화관광과(☎032-453-2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남동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제3조 관련)

성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자택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직장	직장명				직위(직급)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격증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인)

남동구청장 귀하

[붙임2]

[별지 제3호서식]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해당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가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합니다.

. . .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붙임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안서 평가위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 . .

본인은 「제21회 소래포구축제 주관기획사 선정」 사업 제안서 평가에 앞서,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동의인 : (인)

남동구청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남동구청은 위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직장, 학력, 경력, 자격증 보유현황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 보존기간 : 3년
 - 보존사유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보존기간)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정보주체는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아니오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37호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남동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5. 26. ~ 5. 3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478
----------	------

발의년월일 : 2021년 5월 26일
 발 의 자 : 김안나 의원
 찬 성 자 : 이정순 의원 외 2
 명

□ 제안이유

-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평생교육법
- 장애인복지법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제2호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5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 6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작성자 :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참고자료]

□ 평생교육법

-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 장애인복지법

- 제20조(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38호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영유아의 균형 있는 신체성장 및 발달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과 고령화 시대에 맞춘 노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영유아와 노인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유아 체육 및 노인체육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 영유아 체육의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3)

3. 입법예고 기간 : 2021. 5. 26. ~ 5. 3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79
----------	------

발의년월일 : 2021년 5월 26일

발 의 자 : 김윤숙 의원

찬 성 자 : 강경숙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영유아의 균형 있는 신체성장 및 발달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과 고령화 시대에 맞춘 노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영유아와 노인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영유아 체육 및 노인체육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 영유아 체육의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3)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9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 및 제10조의2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영유아 체육”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들의 균형 있는 신체 발육을 위해 성장 및 발달 과정에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13. “노인 체육”이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영유아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영유아 체육의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영유아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3(노인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1. (현행과 같음) <u>12. “영유아 체육”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들의 균형</u>

<신 설>

있는 신체 발육을 위해 성장
및 발달 과정에 필요한 신체
적 활동을 말한다.

<신 설>

13. “노인 체육”이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신 설>

제7조의2(영유아 체육의 진흥) 구
청장은 영유아 체육의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영
유아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3(노인 체육의 진흥) 구청
장은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
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
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프로그램 운영비용 : 강사 수당, 재료 구입비, 상해 보험료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지원에 관한 부분은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해당 조문 신설을 통해 비용증감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작성자 : 체 육 진 흥 과 장 김 은 구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8.>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39호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관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저소득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5. 26. ~ 5. 3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478
----------	------

발의년월일 : 2021년 5월 26일
 발 의 자 : 김안나 의원
 찬 성 자 : 이정순 의원 외 2
 명

□ 제안이유

-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평생교육법
- 장애인복지법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제2호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5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 6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작성자 :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참고자료]

□ 평생교육법

-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 장애인복지법

- 제20조(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40호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장려를 위하여 4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하여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전통 문화 유산 인효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급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수급자격 변동신고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5. 26. ~ 5. 3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이선옥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74
----------	------

발의년월일 : 2021년 5월 26일

발 의 자 : 이선옥 의원

찬 성 자 : 최재현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장려를 위하여 4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하여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전통 문화 유산 인 효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급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수급자격 변동신고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남동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 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 출생으로 4대 이상 가정이 된 경우에도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기준 및 시기) ①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6개월에 50,000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반기일 말월(6월 또는 12월)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한 반기 말월(6월 또는 12월)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4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제7조(수급자격 변동신고) ① 효도수당 수급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효도수당 수급자격에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에 동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효도수당 지원신청서				
직계존속 (80세 이상)	성 명		생 년 월 일	
	주소 및 연락처		☎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소 및 연락처		☎	
	관계			
지급계좌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구 분	신청인		직계존속(80세 이상)	
성 명				
생년월일				
확인사항	■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4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 4대 이상이 3년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3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가정에 출생으로 4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별지 제3호서식]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				
변경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변동 사유				
사 유	내 용			비 고
직계존속 사망 (80세 이상)				
직계비속 사망				
주 소 변 동				
그 외				
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수급자격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 청 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제4조(지원액) 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80세 이상 노인현황 (2021. 3월말 기준)

구 분	계	80~89세	90~99세	100세~
인 원	14,858명	12,764명	2,014명	80명

※ 4대 이상 가구 추출 불가하여 80세 이상 연령별 노인 현황 첨부

- 타 자치단체 참고 : 4대 이상 가구 인구 수요조사 시 해당연령의 0.07% 신청 (남동구 : 10가구)

- 소요예산액 : 50,000원×연 2회×10가구

-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6개월에 50,000원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예상 지급액 100만원으로 조례에 따른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작성자 :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참고자료]

□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90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41호

남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원 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인센티브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5. 26. ~ 5. 3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남동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앱”이란 걷기 활성화에 동참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동통신상의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2. “참여자”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성화를 위해 개설한 남동구 공식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 한다)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걷기 활성화 지원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 구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제5조(지원 방법 및 내용)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 관련 단체 및 커뮤니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커뮤니티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걷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량이 달성된 경우
2.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걷기 활성화 및 해당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과 목표 걸음 수 등의 설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등의 사용)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지정하는 곳에서 지류식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건강생 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제7조(표창)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기록·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 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기존 일반회계 및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으로, 신규 사업의 경우도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작성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 은 선

[참고자료]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제목개정 2019. 12. 3.]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 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42호

남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 상가건물 적용범위(안 제3조)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 관계 기반 조성 등 구청장 및 주민 책무(안 제4조)

- 상생협약체결 권장(안 제5조)
-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안 제6조, 제7조)
- 상생협력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8조,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5. 26. ~ 5. 3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75
----------	------

발의연월일 : 2021년 5월 26일

발 의 자 : 유광희, 황규진, 조성민,
이용우, 정재호 의원

☐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 상가건물 적용범위(안 제3조)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 관계 기반 조성 등 구청장 및 주민 책무(안 제4조)
- 상생협약체결 권장(안 제5조)
-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안 제6조, 제7조)
- 상생협력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8조, 제9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제2조제4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제27조제1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의2
- 「상생협약 표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55호)」 제2조
- 「남동구 표창 조례」 제2조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도·소매업소, 제조·판매업소, 음식점소 등 각종 점포들이 남동구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
2.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원도심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 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임차료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해 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

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5.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 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1항의 규정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 관계 기반 조성 등의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② 주민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에 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협력상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상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상생협력상가 지원) 구청장은 지정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을 위한 정책 자문과 심의, 상생협력 및 관련 분쟁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한다.

1.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내 상생협약의 체결 등 임차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생협력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상생협력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직능단체 및 자생단체 대표 등 지역대표
4.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임대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연구소 등에서 조교수 이상이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6. 그 밖에 상가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생협력 업무 담당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구청장은 지역상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 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의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3항 관련)**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가. 관련조문**

제7조(상생협력상가 지원) 구청장은 지정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 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비용발생 요인

-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내 상생협력상가로 지정 가능한 20개 상가건물의 환경개선 및 공공인프라 조성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비용추계 결과**가. 추계의 전제**

-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의 환경개선 및 공공인프라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연간 한 상가건물 당 2,5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함

※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 : 2021~2024년(4년간)

나. 추계 결과

- 2021년 ~ 2024년 총 사업비 : 200,000천원
- 50,000천원(2,500천원*20개 상가건물)*4개년

다. 재원조달 방안

-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시 상생협력상가 조성비(국비 120,000천원, 시비 40,000천원, 구비 40,000천원)중 상생협력상가 지원 비용으로 우선 편성

※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 2021년 9월 선정예정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1**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붙임 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40,000	40,000	40,000	40,000		160,000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국비·시비)	상생협력	40,000	40,000	40,000	40,000		160,000
	가						
세 출		50,000	50,000	50,000	50,000		200,000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	상생협력	50,000	50,000	50,000	50,000		200,000
	가						
재원 조달		50,000	50,000	50,000	50,000		200,000
의존원 재원	소 계	40,000	40,000	40,000	40,000		160,000
	보조금	국비	30,000	30,000	30,000		120,000
		시비	10,000	10,000	10,000		40,000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지방세		10,000	10,000	10,000		40,0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제2조제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④ (생략)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7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3.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용자의 규모·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생략)

- 제27조의2(상생협약)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별 의무적인 이행사항, 차임과 차임인상률 안정화에 관한 사항,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이행 시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보조 또는 용자의 방법)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용자의 규모·비율 등을 달리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3조의2(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상생협약 표준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55호)

제2조(상생협약의 내용)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협약당사자
2. 임대차 목적이 되는 건축물 현황 및 임대차 계약현황

3. 협약당사자별 의무적 이행사항
4. 차임 및 보증금 인상률 제한에 관한 사항
5.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상생협약에 따른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7.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8. 상생협약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상생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사항 또는 협약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

□ 남동구 표창 조례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 6. 28.)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시행 2020.01.01.]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2.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 부서의 장이 동일인의 위원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참여자가 모집 인원내 부족할 때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어려울 때
3. 긴급하거나 특정한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한 한시적 위원회로 설치할 때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

③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회의 고유 기능과 관련 있는 사람을 우선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동일인이 4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 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할 때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한시적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3.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촉할 때

제6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구청장은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 해당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정 자문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존속 기한)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 등에 명시하

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이라고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구청장이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분과(실무)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 또는 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또는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 ⑥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관계전문가·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
2. 심의수당 :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
3. 여비 :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위원에게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경비 지급

제15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구청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43호

남동구 도로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도로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겨울철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제설작업의 일환으로 결빙방지 포장 및 설해 예방 대책 수립을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설대책 추진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인력 장비 등의 확보 (안 제6조)

- 결빙방지 포장 (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5. 26. ~ 5. 3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도로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오용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76
----------	------

발의연월일 : 2021년 5월 26일
발 의 자 : 오용환 의원
찬 성 자 : 유광희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겨울철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제설작업의 일환으로 결빙방지 포장 및 설해 예방 대책 수립을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설대책 추진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인력 장비 등의 확보 (안 제6조)
- 결빙방지 포장 (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
- 「도로법」 제2조, 제10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도로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의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제설대책”이란 도로, 이면도로 등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 보호 및 도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제설자재”란 도로, 이면도로 등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모래 등을 말한다.
5. “결빙방지 포장”이란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도로 노면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포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도로의 설해 예방 및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도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설 및 한파로 인한 설해 예방을 위해 도로 및 이면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설자재 확보, 결빙방지 포장 등 제설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 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폭설 및 한파특보가 발표된 경우 구에서 제공하는 구민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폭설 및 한파특보가 발표된 경우 자가용 차량이동을 억제하고 야간보행을 삼가는 등 도로결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도로결빙 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설대책 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에 따른 도로 제설 및 설해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 추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결빙 및 설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도로 제설 등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예산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폭설, 한파 등 도로 결빙 발생 시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

4.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마련, 도로 결빙방지 포장 등의 유지관리
리에 관한 사항
5. 도로결빙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에 관한 사항
6. 고립·눈사태·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설해대책 교육·훈련 및 구민 홍보에 관한 사항
8. 친환경적 제설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로 결빙방지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력 장비 등의 확보) 구청장은 도로 제설 및 설해 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제설자재 등 필요한 장비와 자재의 적정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결빙방지 포장) ① 구청장은 도로의 친환경 제설대책으로 결빙방지 포장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 결빙 취약구간에 결빙방지 포장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효과 검증 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로의 제설대책 추진을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도로결빙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제설대책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 조문

제7조(결빙방지 포장)

- ① 구청장은 도로의 친환경 제설대책으로 결빙방지 포장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도로 결빙 취약구간에 결빙방지 포장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효과 검증 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나. 비용발생 요인 : 결빙방지도장 사업

도로 결빙 취약구간 내 결빙방지 포장을 추진 할 경우, 공사비와 매년 전기료를 포함한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범사업 종료 후 확대 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예상 된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결빙방지 포장 방안은 도로 열선 설치사업으로 해석하며, 행정안전부 기준 (2021.1월)에 따라 100m, 2차선 설치 시 약 1억원(전기료 연간 1.5백만원 /3개월 사용비 별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 시범사업 시, 1개소 (100m, 2차선) 추진
- 단계별 사업 시행 시, 매년 1개소 추가 설치(5개년 총 5개소)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은 도로 열선 수명 약2~3년이며, 보수 비용은 설치비 수준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나. 추계 결과

[표1] 도로결빙방지 (예상)사업비 : 2021년~2025년 (단위:천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총 사업비	101,500	103,000	124,500	146,000	167,500	641,000
공 사 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공공요금	1,500	3,000	4,500	6,000	7,500	전기요금
유지관리비	0	0	20,000	40,000	60,000	

※ 산출 예시 : 도로열선 설치사업비(100m기준)

다. 재원조달 방안

사업비 지원 : 재난안전특별교부세50%, 지방비5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유관기관(한전, 수도, 통신 등)의 소규모 굴착공사 시행 시 도로열선 설치사업의 경우 파손을 수반하여 재설치가 필요하고, 원인자복구 비용 부담(설치비용 고가)시 상당한 민원 발생이 야기되며, 일반 이면 도로에는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또한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은 도로 열선 수명 2~3년으로, 설치 이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결빙방지 포장 방안의 신설 사항은 향후 우리 구 예산 및 실정에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

작성자 : 도시건설국 건설과장 오종선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1년)	2차년도 (‘22년)	3차년도 (‘23년)	4차년도 (‘24년)	5차년도 (‘25년)	계
세 입							
세 출		101,500	103,000	124,500	146,000	167,500	641,000
도로열선 설치 및 관리		101,500	103,000	124,500	146,000	167,500	641,000
재원 조달		101,500	103,000	124,500	146,000	167,500	641,000
의존원 재원	소 계	50,750	51,500	62,250	73,000	83,750	320,500
	보조금	50,750	51,500	62,250	73,000	83,750	320,500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50,750	51,500	62,250	73,000	83,750	320,500
	지방세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 발생에 대비하여 설해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설해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4.>

1. 설해 예방조직의 정비
2.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마련
3. 설해 대비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고립·눈사태·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관리
5. 산악지역 등산로의 통제구역 지정·관리
6. 설해대책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
7. 농수산시설의 설해 경감대책 마련
8. 친환경적 제설대책 마련
9. 그 밖에 설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제설방안의 시행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4., 2014. 11. 19., 2017. 7. 26.>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歩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도로의 유지·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9.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독,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1-46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1.05.25.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1.05.25. ~ 2021.06.08.(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기타식품판매업	2016 -0200489	주식회사하나 마트	서*희	만수서로 52, 지하1층 b01호 (만수동, 쓰리제이프라자)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1.05.07.	2021.05.25.

6. 고 지 사 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
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4

2021년 05월 25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2021-47호

코로나19 예방접종 제2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안)

남동구 내 코로나19 예방 백신접종센터 CCTV 설치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동구 보건소(건강증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6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행정예고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제2센터 CCTV 설치
2. 운영관리 : 남동구 보건소(건강증진과)
3. 사업목적 : 예방접종센터 보안 유지
4. 공고기간 : 2021. 5. 26. ~ 2021. 6. 16.
5. 공고방법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
6.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가. 화상정보 보호원칙 :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나.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다.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라. 수집된 정보는 일정기간 저장 후 자동 삭제되며, 권한이 있는 자만 열람 가능

7. 설치(2대) 예정장소

연 번	CCTV(대)	주 소	장 소	비 고
1	2	소래로 540 (수산동)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백신실)	추가설치

8.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9. 촬영범위 및 시간 : 백신접종센터 내 24시간 촬영

10. 운영관리 : 남동구 보건소(건강증진과)

11.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나. 제출기간 : 2021. 5. 26. ~ 2021. 6. 16.

나. 제 출 처 :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다.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 팩스 : 032)453-511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12. 문의사항 : 남동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453-5112

코로나19 예방 백신접종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코로나19 예방 백신접종센터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코로나19 예방 접종센터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 보건소장 귀하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8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4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102 (고잔동) 외 2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39 (고잔동) 외 3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38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5)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470-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102 (고잔동)	2009.11.16.	고잔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21.5.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고잔로 102 기초구간에위치하여102를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294-2, 296-3, 296-4, 296-2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수골로 92 (수산동)	2009.11.16.	아홉개의 우물이 있었다는 지역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21.5.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수골로 92 기초구간에위치하여92를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34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부리안길 61 (운연동)	2009.11.16.	용부리길 안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21.5.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용부리안길 61 기초구간에위치하여61을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39 (고잔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53 (간석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102 (고잔동)	2021.5.24.	건물 멸실로 인한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수골로 92 (수산동)	2021.5.24.	건물 멸실로 인한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72-7 (남촌동)	2021.5.24.	건물 멸실로 인한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연락골로 26 (운연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서로 55 (운연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수남로 9-3 (만수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195 (만수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50번길 6-1 (간석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신로60번길 28 (수산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265번길 8 (구월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316번길 50 (남촌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16번길 33-12 (남촌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54번길 53-107 (고잔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3번길 11 (만수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11번길 4-16 (만수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11번길 4-14 (만수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33번길 38-8 (구월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33번길 38-10 (구월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33번길 8-19 (구월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245번길 5 (간석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47번길 93-12 (만수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4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310번길 37 (간석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352번길 24 (간석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6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352번길 22-1 (간석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12번길 13 (만수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52번길 41 (간석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66번길 34-8 (간석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46번길 21 (간석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제1613호

남동구 구보

2021. 5. 27. 목요일

31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14번길 46 (장수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46번길 40 (간석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15번길 32 (간석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98번길 7 (구월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419번길 81 (논현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수로32번길 18 (만수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수로32번길 4-5 (만수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748번길 80-27 (수산동)	2021.5.2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8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송이주차장)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송이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건축과 ☎032-453-2774, 도시재생과 ☎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년 5월 27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92-1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칭: 송이주차장 신축공사

3. 사업규모

- 대지면적: 885.7㎡
- 연 면 적: 708.0㎡(주차대수: 21대)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송석만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90-15(서창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22.0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이름	주소	
1	논현동	592-11	차	885.7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90호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폐기 고시

관내 설치된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남 동 구 청 장

연번	기준점명칭	기준점번호	평면직각중형선수치		비 고
			X좌표(m)	Y좌표(m)	
1	지적삼각 보조점	보28	531914.125	175743.217	세계측지계
			431608.240	175672.940	중부
			-4621.190	-12506.360	가리
원 점 명		세계측지계좌표, 중부좌표, 가리좌표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75			
설 치 일		2006. 9. 21.			
폐 기 일		2021. 5. 24.			
측량성과보관장소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비 고					